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모경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70

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:모경종·윤종군·박지원

서미화 • 채현일 • 주철현

정진욱 • 이훈기 • 이광희

이병진 · 김동아 · 이재강

장종태 • 이원택 • 김영환

이기헌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, 기록물의 생산·관리·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는 주요 회의에서 어떤 회의록,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생산되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 등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, 주요 기록물을 고의 혹

은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3제4항 및 제51조제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
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3호"를 "제4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요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의3(기록물의 폐기 금지)	제27조의3(기록물의 폐기 금지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
	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폐기 금
	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
	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
	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
	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5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51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	
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	<u>제4호</u>
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	
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	
람은 제외한다)는 3년 이하의	
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	
금에 처한다.	
<u><신 설></u>	1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
	요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
	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
<u>1</u> . ~ <u>4</u> . (생 략)	$\underline{2}$. \sim $\underline{5}$. (현행 제 1 호부터 제 4
	호까지와 같음)